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0. 1. 31
- 다. 상 정 일 자 : 2000. 1. 31 (제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김 세 율
- 나. 개정사유
 - 폐기물 관리법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의 사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실시나 폐기물 등을 제거토록 하고 미 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 제5조)
 -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 봉투 색상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킴. (안 제7조)
 - 쓰레기 봉투 재질을 생분해성수지 30%이상 함유 재질 및 탄산칼슘 함유 재질로 제작 가능토록 함. (안 제8조)
 - 포상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 (안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정 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 2. 8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이 개정되어 법과 지침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기 위한 것으로,

-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봉투의 재질도 생분해 또는 소각 처리가 용이하도록 규정하여 제작 사용케 함.
- 또한 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 투기 억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아울러,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에도 저촉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제19조(포상금 지급)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 한 자를 행정기관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 ‘제19조(포상금 지급)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 한 자를 행정기관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로 수정의결

첨 부 :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실시나 폐기물 등을 제거토록 명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특정다수인이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
2.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 호소에 부유되어 있는 폐기물
3.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직접처리(보관시설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흩날리거나 유출로 주변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제7조 제2항중 "일반용은 녹색, 공공용은 황색"을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을 "크기, 용량, 종류, 재질 및 두께 등은 쓰레기중량제봉투"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고유번호"를 "고유번호, 생분괴성 봉투는 생분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로 한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군수가 제작하며 소각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탄산칼슘 함유 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공업진흥청장등)의 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공공시험기관과 계약을 맺어 관리되고 있는 봉투 제조회사의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의 첨부로 가름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포상금 지급)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자를 행정기관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4] 호 서식 제3호 중 '라' 목 및 '제5호'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제14조 제1항 1호, 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3. (현행과 같음)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가. (현행과 같음)	50	50	5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5	100	나. (현행과 같음)	100	100	100
다. 휴식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150	200	다. (현행과 같음)	100	20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50	5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지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현행				개정안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배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및 동법제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 2 폐기물재생처리를 한 자는 제외)	500	750	1,000	① 폐기물의 양이 100ℓ 미만시	200	300	500
				② 폐기물의 양이 1000ℓ 미만시	350	400	500
				③ 폐기물의 양이 3000ℓ 미만시	500	500	500
				마. (현행과 같음)	500	800	1,000
5.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300	500	1,000	5. 군민의 책무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300	700	1,000

현행				개정안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표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16조제2항)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법제7조 제3항)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5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 (군민의책무) 군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실시나 폐기물 등을 제거토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를 소홀히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폐기물을 부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 2.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 호소에 부유되어 있는 폐기물 3.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직접처리 (보관시설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흩날리거나 유출로 주변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p>제7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등) ①생략</p> <p>②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은 녹색, 공공용은 황색으로 한다.</p> <p>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p>	<p>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 - -</p> <p>③ - - - - - 크기, 용량, 종류 및 두께 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 - - - -</p>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규격에 따른다.</p> <p>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 봉투는 <u>군수가 제작한다.</u></p> <p>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u>군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u> 등을 표시하고 <u>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u>를 할 수 있다.</p> <p>③(생략)</p> <p>④군수는 <u>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u>하여야 한다.</p> <p>제19조 (1998. 8. 3 삭제)</p>	<p>-----.</p> <p>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u>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를 30%이상 함유된 재질</u>로 군수가 제작하며 <u>소각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탄산칼슘 함유봉투도 제작</u>할 수 있다.</p> <p>② ----- ----- ----- ----- <u>고유번호 생분괴성봉투</u>는 생분괴성수지가 30%이상 함유</p> <p>③(현행과 같음)</p> <p>④군수는 <u>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공업진흥청장등)의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u>하고 검수하여야 한다.</p> <p><u>다만, 상시적으로 공공시험기관과 계약을 맺어 관리되고 있는 봉투제조 회사의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의 첨부로 가림</u>할 수 있다.</p> <p>제19조 (포상금 지급)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은</p>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u>투기한자를 행정기관에서 제18조의</u> <u>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u> <u>록 신고한자에 대해 과태료부과 금액</u> <u>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u></p>